



문서번호 : 11-07-사무-01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장경욱 변호사/ 02-3482-3348)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전송일자 : 2011년 7월 8일(금)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9매

[보도자료]

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와 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기 변호사)에서는 2011. 7. 8.(금)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과 관련하여, 고발인 문정현 외 2인이 피고발인 스캇 플로이스 대령 외 1인을 상대로 2011. 6.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한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 음

가. 피고발인의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나. 그리고 피고발인이 미합중국의 군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미합중국 군인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재판권이 있음은 관련 규정 및 여러 사법기관의 판단에서 명백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적법한 형사관할권이 존재하는 수사기관인 귀 청에서 피고발인을 엄히 추궁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나아가 법에 정하여진 대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리며,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2011년 7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의견서

수신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발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환경위원회

제목 :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검토 의견

고발인 문정현 외 2인이 피고발인 스캇 플로이스 대령 외 1인을 상대로 2011. 6. 2. 귀청에 고발한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고발장 기재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피고발인은 군산 미 공군기지의 유류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 책임자들인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를 누출 ·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5. 24.경 유류저장시설로부터 기지 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밖 수로와 새만금까지 유류를 누출 · 유출시켰다는 것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추가

피고발인은 군산 미 공군기지의 유류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 책임자들인바,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군용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전단), ②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누출방지시설,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시설, 누출될 경우에 대비한 오염확산방지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를 누출 ·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가. 군산시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유류저장시설을 군산 미 공군기지 내에 설치하였고,

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류저장시설에 누출방지시설,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시설,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에 필요한 시설 등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다. 2003. 3. 10.경, 2005. 6. 22.경¹⁾, 2011. 5. 24.경 유류저장시설로부터 기지 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밖 수로 등에까지 유류를 누출 · 유출시켰다는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행위의 형사상 죄책

피고발인의 “유류저장시설 미신고 설치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전단에 위반한 행위이고, “토양오염방지시설 미설치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 각 행위는 같은법 제3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조항의 구성요건행위입니다.

피고발인의 “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를 누출 ·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행위이고, 위 행위는 같은법 제7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조항의 구성요건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사 피고발인에게 누출 · 유출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1) 만약 피고발인의 2003. 3. 10.경, 2005. 6. 22.경의 행위가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어 공소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점을 2011. 5. 24.경의 범죄행위 판단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조항의 구성요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존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고 합니다)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Respect of Local Law))에서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SOFA의 합의의사록(2001. 1. 18.) 제3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에서는

“①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발생통고를 받아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② 한미행정협정사건중 신원불명의 피의자의 신원이 판명된 때에는 즉시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증명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체포·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신병인도 요청에 의하여 신병을 인도한 때에는 즉시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보고일부 21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한 후 그 사유보고일부 14일 이내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우리나라가 제1차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사안이 경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발생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결과보고와 처분보고는 이를 생략한다.
- ⑦ 우리나라가 전속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결과보고를 생략하고 그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건의서에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 ⑧ 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주한 미합중국군당국으로부터 그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⑨ 법원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중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판결선고 후 3시간 이내에 판결주문내용을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검찰결정 및 판례의 태도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2001형제54683호 불기소결정에서는

2001년 대구시 남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워크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유류저장시설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령관 등을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로 고발하자, 2002. 1. 2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의무위반에 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그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미군기지 내의 기름탱크 등에 대하여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에서는

“미8군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이 다량의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을 썩크대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공무집행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하여 공무집행과는 상관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에 따른 공무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공무집행중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1차적인 형사재판권이 있으며, 한편 위 미군속이 소송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하고, 미군 당국이 이에 필요한 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라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죄명으로 징역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결정 2000헌마462 사건에서는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가 공여 받은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운영, 경호 및 관리 등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출입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한미 공동방위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구역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합중국 정부가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2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가 시설 및 구역을 개량한 것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시설 및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합중국 군대가 공여 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전체를 살펴보다도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다. 본 사안의 경우

SOFA 제7조 규정 및 SOFA합의 의사록(2001. 1. 18.)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합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본 사안의 피고발인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은 관련 검찰청 불기소결정, 지방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법률위반의 죄책은 미합중국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위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관할권이 있음은 관련 지방법원 판결 및 검찰보고사무규칙 제6조에 의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적법한 형사관할권이 존재하는 수사기관인 귀 청에서 피고발인을 엄히 추궁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나아가 법에 정하여진 대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결 론

- 가. 피고발인의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나. 그리고 피고발인이 미합중국의 군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미합중국 군인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재판권이 있음은 관련 규정 및 여러 사법기관의 판단에서 명백합니다.
- 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적법한 형사관할권이 존재하는 수사기관인 귀 청에서 피고발인을 엄히 추궁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나아가 법에 정하여진 대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 7.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장경욱 [직인생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직인생략]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